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배명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7년 11월 일
제 출 자 : 배명호 의원 외 6인

1. 제정이유

○ 지역발전의 미래성장 동력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인구의 효율적인 증대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을 마련하여 우리군 전입에 따른 지원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 대상 및 내용(안 별표) ※ 2018. 1. 1.부터 시행

시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전입세대 정착지원 사업	전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 관련 법령에 따라 군으로 전입한 후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	· 전입세대에 대해 1명당 지원금 10만원 지급 (세대별 최대 50만원 지급)
인구증가 시책유공 유관기관·기업 지원사업	제3조제1항제1호의"전입세대 정착지원 사업"지원 대상자가 5명 이상 소속 된(재직 중인) 유관기관·기업	· 1명당 지원금 10만원 지급 (기관·기업별 연간 최대 1,000만원 지급)

※ 단, 지원금을 지급받고 타 시·군·구 전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지원 절차 및 방법(안 제4조)

-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장에게 지원신청서 제출
- 읍면장이 신청서 사실 확인 후 군수가 지급 결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및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나. 예산조치 : 200,000천원 정도(관련부서와 합의 예산반영)

마. 조례안예고 : 의견 없음 [2017.11. 9~11.13.(5일간)]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전입세대 정착지원과 인구증가 시책유공 유관기관·기업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안 제3조제2항 별표에서는 전입세대 정착 지원 사업으로 6개월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1명당 10만원(세대별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인구증가 시책유공 유관기관·기업 지원사업으로 “전입세대 정착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가 5명 이상 소속된(재직 중인) 유관기관·기업에 대해 1명당 10만원(기관·기업별 연간 최대 1,000만원) 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지원금을 지급받고 타 시·군·구 전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절차와 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거짓이나 부당하게 지원 받았을 경우 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경북 6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인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군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삼오시대(三五時代)를 위해 현재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인구 5만 명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